#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097 발의연월일: 2022. 4. 5.

발 의 자: 김철민·오영환·김정호

이병훈 • 이원욱 • 도종환

이정문 • 민형배 • 권인숙

이수진 • 윤준병 • 안민석

유기홍 • 박찬대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에 따르면 초·중·고 학교시설의 건축·축조·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등은 「건축법」 등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감독청(시·도 교육청)이 하도록 되어 있음.

그런데, 2014년 1월 「건축법」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가설건축물 신고조문이 같은 조 다른 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이를 인용하고 있는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은 개정되지 않아, 법령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, 이러한 여건에서 각 시·도 교육청은 임시교사 등 학교 내 가설건축물을 당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보아 왔음.

이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학교 증·개축 및 리모델링 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학교 내 가설건 축물에 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육청이 관련업무를 수 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제6항). 법률 제 호

##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6항 중 "제20조제1항·제2항"을 "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교사에 대해서는 「건축법」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학교시설의 건축등) ①	제5조의2(학교시설의 건축등) ①
~ ⑤ (생 략)	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	6
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	
보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「건	
축법」제16조, 제17조, <u>제20조</u>	
<u>제1항ㆍ제2항</u> , 제21조제1항, 제2	제1항부터 제3항까지,
5조, 제27조, 제79조 및「건축물	
관리법」제30조에도 불구하고	
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	
등을 한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	<u>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</u>
	사용하는 임시교사에 대해서는
	「건축법」 제20조제3항을 준용
	<u>한다.</u>